

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6월 18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, 포항시장

2)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3)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•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)

1) 개정이유

○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·정원 관리실태 감사 처분요구를 성실히 이행하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가. 기구 조정(안 제19조, 안 별표 2)

• 명칭변경: 건설교통사업본부 → 건설교통사업소,
맑은물사업본부 → 맑은물사업소

3)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-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·정원 관리실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0조에 의하면 사업소 형태의 독립된 기관을 사업본부, 지역본부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·도 단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조직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, 명칭변경에 따라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